[별지 제29호의2 서식] <개정 99. 4. 30> (제38조의2 제1항)

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신청서					처리기간
					7월
신청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		
	주 소	(전화)			
신청학원	명 칭	(전화)			
	소 재 지				
학감 또는 부학감	성 명		주민등록번호		
	주 소	(전화)			
	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지 여부	□겸임 □비겸임	교통관리직등 근무경력		

도로교통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경찰청장 귀하

구비서류		수수료
	1.전문학원의 원칙(原則) 1부 2.전문학원 카드 1부 3.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, 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1부 4.부대시설 및 설비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5.주민등록증 사본(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) 1부 6.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(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첨부) 각 1부 7.학감(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)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8.전문학원의 직인, 학감(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)의 인장의 인영 각 1부 9.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, 기능검정 합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인장의 인영 각 1부 10.강사의 자격증 사본, 교육 실시상황의 확인을 위한 인장의 인영 각1부 ※제7호 내지 제10호 서류는 지정신청 후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	50,000원

2106-38011민 210㎜×297㎜
95. 6. 23 승인 (신문용지 54g/㎡)